

# 쌍특검 오늘 재표결...국힘 “부결” vs 민주 “부결땀 재발의”

### 내란·김건희 특검법...국힘,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반대 공감대 민주 “국힘, 내란 사태 거부 명분 없어...국민에 위한 정당 인식”

여야는 7일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일명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의원은 “쌍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당론 부결 방침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시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국회의원 권상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 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적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원 지도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은 만큼 ‘이탈표’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

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대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내란동조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내일(8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의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 등도 거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의원 공동 기자회견

야권 “국힘,尹 체포 방해는 내란공범 자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던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내란죄, 헌법 위반에 집중...소추 사유 변경 없어”

### 내란 국조 특위...국힘 체포영장 집행 저지·정부 요인 증인 채택 설전

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 형법상 내란죄 삭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양고 없는 전방’”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는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초소속당 용혜인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고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강선영·박준대·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대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과 일부 군 출신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국회의원 규곡역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최상목 대행 등 177명 기관 증인 의결

### 22일, 2월 4·6일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증인명단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광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을 놓고선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

### 여의도 브리핑

## 대통령 경호처 폐지...독립기구로 경찰청 전담

### 민형배,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민주·광주 광산울)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동안 권력 남용·축근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준 행태는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 권력화를

막고 경호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갖는 권력 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매립지 등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구	공구	중공면적(A+B+C)	2024년까지 기처분면적(A)	2025년~2026년 관리·처분 계획 면적(B)			제외면적(C)	행정구역(토지구상지)	비고
				계	임대	매각			
영산강2	합계	78,666,742.5	49,626,545.4	9,750,661.0	-	-	19,289,536.1		
	계	4,192,027.4	2,507,009.6	235,583.0	235,583.0	-	-	1,449,434.8	
	영암6-4	4,192,027.4	2,507,009.6	235,583.0	235,583.0	-	-	1,449,434.8	영암군 2025년 관리·처분 대상지
영산강3-1	계	34,820,757.2	26,434,819.7	520,932.7	520,932.7	-	-	7,865,004.8	
	마산1	10,749,652.0	8,023,740.0	-	-	-	-	2,725,912.0	해남군
	마산2	6,856,736.9	4,680,100.5	520,932.7	520,932.7	-	-	1,655,703.7	해남, 영암
	마산3	1,924,547.9	1,078,696.5	-	-	-	-	845,851.4	해남군
	산이2-1	7,133,971.4	7,133,971.4	-	-	-	-	-	해남군
영산강3-2	계	39,653,957.9	20,684,716.1	8,994,145.3	8,994,145.3	-	-	9,975,096.5	
	화원1	8,754,236.5	5,680,206.2	853,419.2	853,419.2	-	-	2,220,611.1	해남군 2025년 관리·처분 대상지
	금호1-1	9,963,667.7	7,709,970.3	-	-	-	-	2,243,697.4	해남군
	금호1-2	8,697,017.1	6,137,085.9	61,942.1	61,942.1	-	-	2,497,989.1	해남군 2025년 관리·처분 대상지
	금호2-1	10,854,138.8	-	8,078,784.0	8,078,784.0	-	-	2,775,354.8	해남군 2025년 관리·처분 대상지
산이1	계	1,127,897.8	890,453.7	-	-	-	-	237,444.1	해남군
	산이1	267,000.0	267,000.0	-	-	-	-	-	해남군

※ 2024까지 기처분 면적: 임대계약 증인 면적, 매각면적, 농업특화단지 면적 등 기시행 면적임  
※ 제외면적: 농업기반시설부지(방조제, 도로, 용수로, 배수로, 제방등), 하구둑구조개선사업 편입부지 등

### 2.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계획별 구역 및 면적

·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자(농지은행 분임관리자)가 결정

### 3.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방법 및 임차자 결정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15조, 같은 규정 제16조, 같은 규정 제25조, 같은 규정 별표 2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과 2025년 ~ 2026년 매립지등 관리·처분 심의 위원회의 결정 및 2025년 ~ 2026년 매립지등 임대공고에 따른.  
※ 관련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2025년 ~ 2026년 매립지등 관리·처분 계획 공고일(2025. 1. 8)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함.

### 4. 2025년 ~ 2026년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일정

매립지등 관리·처분 심의위원회	→	임대공고	→	임대신청	→	임차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계약체결
2025.2.3. ~ 2025.2.7.		2025.2.12. ~ 2025.2.19.		2025.2.12. ~ 2025.2.26.		2025.3.12.		(2025년분) 2025. 03. 14. (2026년분) 2026. 02. 02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행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에 2026년 임차자까지 선정하지만 임대료 산정 시점을 고려 2026년 임대대상자의 본계약은 임대료 산정이 가능한 2026년에 실시 예정

### 5. 기타사항

- 2025년 ~ 2026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지번, 면적,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유지관리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2025년 ~ 2026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중 임대관련 세부사항은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25조에 의한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별도로 임대공고 할 계획입니다.
- 이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처분계획 승인문서 및 「농어촌정비법령」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합니다.
-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임대 시 일반적 제배를 금지합니다. 단 기존에 운영실적이 있는 친환경경매 제배대상지는 허용 (수출·가공용·백) 간척지에서 실제 제배 경험이 있는 수출용 장립종자를 중심으로 허용 그 외 수출·가공용·백 제배를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연계사업 또는 민간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수출·가공용으로 활용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가루쌀) 가루쌀 외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향후 정부의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지에 선정 될 경우 작물 변경 가능
- 추가 정보사항은 우리공사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061-270-64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